

#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목차

##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

제1조 목적

제2조 용어의 정의

## 제2관 지정대리청구인에 관한 사항

제3조 적용대상

제4조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

제5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

제6조 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 지급절차

제7조 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

##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

제8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

## 제4관 기타사항 등

제9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

#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

##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

### 제1조 [목적]

이 특약은 보험계약자(이하 '계약자'라 합니다)와 보험회사(이하 '회사'라 합니다) 사이에 대리청구인으로 하여금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금(사망보험금 제외)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(이하 '주계약'이라 합니다)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.

### 제2조 [용어의 정의]

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,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.

#### 1. 계약관계 관련 용어

가. 주계약 : 주된 보험계약을 말합니다.

나. 특약 : 주계약에 부가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.

다. 계약자: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.

라. 피보험자: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.

마. 보험수익자: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.

바. 보험증권: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.

#### 2. 대리청구인 관련 용어

가. 기명 지정대리청구인 : 계약자가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제 4 조 [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] 제 1 항에 따라 기명으로 지정하는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말합니다.

나. 무기명 지정대리청구인 : 계약자가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제 4 조 [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] 제 1 항에 따라 무기명으로 지정하는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말합니다.

## 제 2 관 지정대리청구인에 관한 사항

### 제3조 [적용대상]

이 특약은 계약자,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.

### 제4조 [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]

(1)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험금의 대리청구인(2 인 이내에서 지정하되, 2 인 지정시 대표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)(이하, "지정대리청구인"이라 합니다)을 기명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명으로 제 7 조 [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

의 청구] 제 1 항 제 4 호의 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. 단, 지정된 무기명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 또한, 지정대리청구인은 제 5 조 [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]에 의한 변경지정 또는 제 7 조 [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]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.

1.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
2. 피보험자의 3 촌 이내의 친족. 단, 제 1 항에 따른 무기명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은 피보험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
3. 제 1 호 및 제 2 호에도 불구하고 비혼, 독신의 사유로 배우자 혹은 3 촌 이내의 친족으로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이 불가능하여 회사가 제 1 호 및 제 2 호의 대상자가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계약자로부터 확인한 후 계약자와 회사 간의 개별약정에 따라 지정된 자

#### 【지정대리청구인 지정 예시】

- 기명 지정대리청구인  
계약자가 기명하여 지정 : (예시) "김OO"
- 무기명 지정대리청구인  
계약자가 특정인을 기명하지 않고 지명 : (예시) 가족관계등록부 상 배우자

#### 【무기명 지정대리청구인 판단 예시】

- 보험 가입 당시 무기명 지정대리청구인을 가족관계등록부 상 배우자(당시 해당 서류상 배우자 A)로 지정한 후에 계약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어 대리청구하는 시점에 가족관계등록부 상 배우자가 B인 경우  
→ 해당 시점 지정대리청구인은 제7조 [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] 제1항 제4호로 증명할 수 있는 배우자 B

(2) 제 1 항에 따라 지정대리청구인을 최초 지정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1. 지정대리청구인 신청서(회사양식)
2. 계약자의 신분증(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,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계약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)
3.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등록부(기본증명서) 등 계약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4.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

(3) 제 2 항에도 불구하고, 제 1 항에 따라 계약자가 지정대리청구인을 무기명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 2 항 제 3 호 내지 제 4 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.

(4) 제 1 항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,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 3 조 [적용대상]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.

### 제5조 [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]

(1)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.

1.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(회사양식)
2. 계약자의 신분증(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,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계약자

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)

3.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등록부(기본증명서) 등 계약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
4.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

- (2) 제 1 항에도 불구하고, 제 4 조 [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] 제 1 항에 따라 계약자가 지정대리청구인을 무기명으로 변경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 1 항 제 3 호 내지 제 4 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.
- (3) 지정대리청구인의 사망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보며, 계약자는 제 1 항에 따라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하여야 합니다.

#### 제6조 [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 지급절차]

- (1) 지정대리청구인은 제 7 조 [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]에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 3 조 [적용대상]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(사망보험금 제외)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2 인의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중 대표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으며, 대표지정대리청구인이 사망 등의 사유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표가 아닌 지정대리청구인도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.
- (2) 제 1 항에도 불구하고, 제 4 조 [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] 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무기명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(사망보험금 제외)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은 보험수익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. 다만, 2 인 이상의 무기명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중 한 명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(3) 제 1 항에 따라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.
- (4) 제 4 조 [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] 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이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였으나 보험금 청구 시점 당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가 아닐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.

#### 제7조 [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]

- (1)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.
1. 청구서(회사양식)
  2. 사고증명서(진단명 등이 기재된 의료기관 발급서류,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는 서류)
  3. 지정대리청구인의 신분증(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,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계약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)
  4.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(가족관계증명서) 및 주민등록등본
  5.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
- (2) 제 1 항 제 2 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 3 조(의료기관)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.

### 제 3 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

#### 제8조 [특약의 체결 및 소멸]

- (1) 이 특약은 계약자의 청약(請約)과 회사의 승낙(承諾)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.

(2) 제 3 조 [적용대상]의 보험계약이 해지(解止)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갖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.

#### 제 4 관 기타사항 등

##### 제9조 [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]

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.